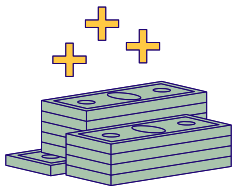

정액 감세 보충 급부금에 대하여

살고 계신 곳의 관할 관공서에서 안내를 받으셨나요？

살고 계신 시정촌으로 부터「2024년도(레이와 6년도) 정액 감세 보충 급부금(조정 급부금)」의 안내를 받으신 분 께서는、급부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급부금을 수령하시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급부금의 신청 기간은 2024년 10월31일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청 방법과 신청 기한은 시정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시정촌으로 부터의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급부금의 개요

내각관방의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

정액 감세 전의 세액이 적고, 정액 감세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분에게는, 정액 감세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대략적인 금액이 1만엔 단위로「조정 급부금」으로서 급부됩니다.

※합계 소득액이 1,805만엔을 넘는 분, 정액 감세 전의 2024년분의 추산 소득세액과 2024년도 개인 주민세 소득 할액이 모두 0엔인 분은 대상 외로 됩니다.

지급액의 산정 방법：

A 정액 감세 가능액 － B 2024년분 추산 소득세액 ＝ ❶ 소득세분의 공제 부족액（감세 할 수 없는 금액）

C 정액 감세 가능액 － D 2024년분 개인 주민세 소득할액 ＝ ❷ 개인 주민세분의 공제 부족액（감세 할 수 없는 금액）

➡ ❶ ＋ ❷ ＝ **조정 급부금의 지급액**（1만엔 단위로 올림）

（예） 합계 소득금액이 1,805만엔 이하로 동일 생계 배우자 1인과 부양친족 1인의 3인 세대인 경우

A 90,000엔（3만엔×3인） － B 18,000엔（소득세） ＝ ❶ 72,000엔

C 30,000엔（1만엔×3인） － D 20,000엔（주민세） ＝ ❷ 10,000엔

➡ ❶ ＋ ❷ ＝ 82,000엔 ⇒ **90,000엔**（1만엔 단위로 올림）

정액감세란？

납세자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 친족 1명에 대해 정액 감세됩니다.
※총 소득금액이 1,805만엔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2024년분의 소득세 ➡ 1인 ／ 30,000엔
- 2024년도분의 개인 주민세 소득할 ➡ 1인 ／ 10,000엔

（예） 합계 소득금액이 1,805만엔 이하로 동일 생계 배우자 1인과 부양친족 1인의 3인 세대인 경우

- 소득세의 정액 감세액 30,000엔 × 3인 ＝ A 90,000엔
- 개인 주민세 소득할의 정액 감세액 10,000엔 × 3인 ＝ C 30,000엔

감세액의 합계 ➡ 120,000엔

자세한 내용은 내각관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https://www.cas.go.jp/jp/seisaku/benefit2023/index.html

주민세 비과세 세대인 분

주민세 비과세 세대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되는 세대를 포함) 에 대해, 이하의 급부금이 있습니다.

- 2023（레이와5）년도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의 급부금
- 2023（레이와5）년도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되는 세대에의 급부금
- 저소득인 육아세대에의「어린이 가산」
- 2024（레이와6）년도 개인 주민세에 대해 새로이 비과세 등이 되는 세대에의 급부금

각 급부금의 대상자 앞으로 시정촌에서 안내가 발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살고 계신 시정촌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문의처

절차나 구체적인 급부방법, 신청기한은 시정촌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살고 계신 시정촌의 관공서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문의하실 때에 통역이 필요하신 경우, 홋카이도 외국인 상담센터에 연락하여 주십시오.